

■ ■

2017.4.28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 1.
 - 2.
 - 3.

[2014.7.1] [12325 , 2014.1.21,]

1

1 ()

2 ()

1. " "

2. " "

3. " "

4. " " 가

5. " " 가 가 , ,

6. " " 가 3 가 3

7. " (所定) " 50 , 69 「 」 46

8. " " 1

1

1 6

3 ()

4 () 가

5 () 가 ,
가 .

6 () (性)
 , .

7 () , , ,

8 ()

9 ()

10 () 가 , (公民權)
(公) . ,
(公) .

11 () 5 가 (家事)
 ,
4

. < 2008.3.21 >

12 () 가, . . , . . ,
. . , .

13 (,) (" ") 가 「
」 .
. < 2010.6.4 >

14 () (要旨)
가

1 99 1

(寄宿)

2

15 ()

1

16 ()

1

[8372 (2007.4.11) 3 2007 6 30]

17 ()

. <

[2010.5.25 >](#)

1.

2.

3. 55

4. 60 가

5.

1 1

. .

2

4

. ,

가

.< [2010.5.25 >](#)

18 ()

1

4 (4) 1

15

55

60

.<

[2008.3.21 >](#)

19 () 17

1

가

,

20 ()

21 () (前借金)
(前貸)

22 ()

- 1. 가 ,
- 2. 가

23 () , (懲罰)(" ") , 가 30
(産前)・(産後) 30
가 84

24 () 가
가
1

2

") 50
1

< 2010.6.4 >

가 1 3
23 1 가

25 () 24
3 가

24 가
24 , ,

26 () ()
30 , 30 30

가 가 , . ,

. <

[2010.6.4>](#)

27 ()

1 가 26

1 . < [2014.3.24>](#)

28 () 가

1 3 .

29 () 28

1 .
1 .
1 「 」
(" ")가 .

30 () 29

1 , .
가 1 () 가
(原職復職)

31 () 「 」

10

1

15

「

」

(訴)

1

2

,

.

32 (

)

,

31

33 (

)

(

)

2

1

30

1

,

1

,

2

1

2

가

가

1

가

15

34 (

)

가

「

」

35 (

)

26

1.

3

2. 2

3.

6

4.

6

5.

[, 2014 3, 2015.12.23, (2007. 4. 11. 8372) 35 3 .]

36 () 가 가
14 , , . ,

37 () 36 「
」 2 5 ()
가 14
100 40 「 」

. < 2010.5.17 >

1 가 . ,
가

38 () , , 「 .
(質權) . 「 . 」 .
, . 「 . 」

. < 2010.6.10 >

1 . 「 . 」

, . < 2010.6.10 >

1. 3

2.

39 () 가 , , , .

1 가 .

40 ()

. .

41 ()

, , .

1 .

42 ()

3

3

43 () (通貨)

1

43 2()

36 , 43 , 56

(" ") (" ")가 3

2

가

1

3

가

1

3

1

(" ")

1

[[2012.2.1](#)]

43 3() 「

」 25 2 1

3

2

가

1

2

(

" ")

가

1

1

[[2012.2.1](#)]

44 ()
(下受給人) (直上)

가

. < [2012.2.1](#) >

1

. < [2012.2.1](#) >

44 2() 2 「
」 2 11 (" ")
2 7 가 가 ()
)

. < [2011.5.24](#) >

1

「 」 2 7 가

. <

[2011.5.24](#) >

[[2007.7.27](#)]

44 3()

가

()

1.

2. 「 」 56 3

, 56 4 , 「

」 5 7 ,

3. 가 가

가

「 」 2 10 (" ")

2 ()

)

1 2
 ()
 가 「 」 404
 .< [2011.5.24](#)>
 1 2

[[2007.7.27](#)]

45 () 가 , , ,
 (非常)

46 ()
 100 70 , 100
 70
 1 가
 1

47 ()

48 () 가
 가 , ,

49 () 3

4

50 () 1 40
 1 8
 1 2 가
 .< [2012.2.1](#)>

51 () ()
 2 1 50 1
 50 1 ,

50 2 . ,
48 . 3

1 50 1 , 50 2
50 1 , 52 ,

- 12 .
- 1.
- 2. (3)
- 3.
- 4.

1 2 15 18

1 2

(賃金補填方案)

52 () ()

1

1

50 1

1

50 1

, 1 50 2

1. (15 18)

2. (1)

3.

4.

5. 가

6.

53 () 1 12 50

1

12

51

52 2

1

12

52

2

. , 가

가

1

가

.< 2010.6.4 >

3

.< 2010.6.4 >

54 () 4 30 , 8 1

가

55 () 1 1

56 (.) (53 . 59 69)
(10 6)
100 50 가

57 (가) 56
가

58 () 가

가
1

가

가

- 1.
- 2. 가
- 3.
- 1 3

59 ()
가 53 1 (週) 12

54

- 1. , ,
- 2. , , ,
- 3. , , ,
- 4.

60 (가) 1 80 15 가

. < 2012.2.1 >

1 1 가 . < 2012.2.1 >
1 가 2 가 2
가 15 , 가 2 가
가 15 .
3 1 가 1 가 가
2 1 가 가 . 가 가
가 25 .
1 4 가 가

, 가 가
1 3
.< 2012.2.1 >

1. 가
2. 74 1 3 가
1 4 가 1 . ,

61 (가) 가 60 1 . 3 4 가 가 가

60 7 가 , 60 7

. < 2012.2.1 >

1. 60 7 6 10 가
가 , 가

2. 1 가 10 60
가 가 가
7 2 가 가

62 (가) 60

가 .

63 () 5 , . < 2010.6.4 >

- 1. (栽植) • ,
- 2. (採捕) • , ,
- 3. (監視) (斷續的) 가
- 4.

5

64 () 15 (「 • 」)
 18) (就職認許證)
 . < 2010.6.4 >
 1 (職種)
 1
 . < 2010.6.4 >

65 () 1 (" ")
) 18 • .
 가 18 1 • .
 1 2 .

66 () 18 가 . < 2007.5.17 >

67 () .
 , . < 2010.6.4 >
 18 17
 . < 2007.7.27 >

68 () .
 69 () 15 18 1 7 , 1 40
 , 1 1 , 1 6

70 () 18 10
6

18 10 6

가

.< 2010.6.4>

1. 18 가

2. 1 가

3. 2 가

.< 2010.6.4>

71 () 1
1 2 , 1 6 , 1 150

72 () 18 (坑内)

73 (가) 가 1 가

74 () 90 (가
120) 가
45 (60)

.< 2012.2.1, 2014.1.21>

가 가 1 가

가 45 (60)

.< 2012.2.1, 2014.1.21>

가

가 (「

」 14 1) .< 2012.2.1>

1 3 가 60 (

75) , 「 가

18 가

.< 2007.12.21, 2012.2.1, 2014.1.21 >

가

1

가

가

.< 2012.2.1 >

.< 2008.3.28, 2012.2.1 >

12

36

가 1 2

. , 1

8

1

6

.< 2014.3.24 >

7

.< 2014.3.24 >

7

< 2014.3.24 >

[] 74 7 , 74 8 , 74 9

1. 300

: 6

2. 300

: 2

74 2()

가 「 」

10

1

[2008.3.21]

75 () 1

(乳兒) 가

가

1 2

30

6

76 ()

「 」

7

77 ()

가 ,

8

78 () 가

1

[2008.3.21 >](#)

.<

79 () 78

100 60

.< [2008.3.21 >](#)

1

가

100 60

.< [2008.3.21 >](#)

.< [2008.3.21 >](#)

80 () 가

,

가

.< [2008.3.21 >](#)

가 가

가

가

.< [2008.3.21 >](#)

.< [2008.3.21 >](#)

81 () 가

가

.

82 () 가

가

1,000

.< [2008.3.21 >](#)

1

,

가

.< [2008.3.21 >](#)

83 () 가

가

90

.< [2008.3.21 >](#)

84 () 78

가

2

1,340

85 ()

80 , 82 84 1

86 ()

87 ()

가

「 」

가 (價額)

88 ()

가

. < 2010.6.4 >

1 가

1

. <

2010.6.4 >

. < 2010.6.4 >

. < 2010.6.4 >

1

2

[2010.6.4]

89 ()

88 2

. < 2010.6.4 >

1 가

1

90 ()

(元受給人)

1

, 2

2

(催告)

91 ()

92

. <

2008.3.21 >

92 () 3

9

93 () 10

. < 2008.3.28, 2010.6.4, 2012.2.1 >

- 1. 가
- 2. (昇給)
- 3. 가
- 4.
- 5. 「 」 4
- 6.
- 7.
- 8. 가 . 가
- 9.
- 9 2. .
- 10. (災害扶助)
- 11.
- 12.

94 ()

93

1

95 () (減給)

1 1 2 1 , 1

10 1

96 ()

.<

2010.6.4 >

97 ()

10

98 ()

99 ()

- 1. (起床), ,
- 2.
- 3.
- 4.
- 5.
- 6.

1

100 () , (風紀)

1

11

101 ()

.< 2010.6.4 >

, (任免),

102 () , , (臨檢)
(尋問)

1 2

(檢診指令書)

. < 2010.6.4 >

3

「

」

103 ()

104 ()

. < 2010.6.4 >

1

105 ()

106 ()

. < 2010.6.4 >

12

107 () 7 , 8 , 9 , 23 2 40 5
3

108 () 3
5

109 () 36 , 43 , 44 , 44 2, 46 , 56 , 65 72
3 2 . < 2007.7.27 >
36 , 43 , 44 , 44 2, 46 56

. < 2007.7.27 >

110 () 2 1

. < 2009.5.21, 2012.2.1 >

1. 10 , 22 1 , 26 , 50 , 53 1 • 2 • 3 , 54 ,
55 , 60 1 • 2 • 4 5 , 64 1 , 69 , 70 1 • 2 ,
71 , 74 1 5 , 75 , 78 80 , 82 , 83
104 2

2. 53 4

111 () 31 3

1 1

112 () 111

1 가

113 () 45

1

114 ()

500

. <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6 , 16 , 17 , 20 , 21 , 22 2 , 47 , 53 3 ,
67 1 • 3 , 70 3 , 73 , 74 6 , 77 , 94 , 95 ,
100 103

2. 96 2

115 ()

107 , 109 111 , 113 114

(科) . ,

가

[[2009.5.21](#)]

116 ()

500

. < [2009.5.21, 2010.6.4, 2014.3.24](#)>

1. 13 ,

가

2. 14 , 39 , 41 , 42 , 48 , 66 , 74 7 , 91 , 93 ,
98 2 99

3. 102

(臨檢)

1

< 2010.6.4 >

<2009.5.21 >

<2009.5.21 >

<2009.5.21 >

< 8372 ,2007.4.11 >

1 () . , 16 24
 2007 4 12 , 12 , 13 , 17 , 21 , 23 1 , 24
 3 , 25 1 , 27 33 , 37 1 , 38 , 43 , 45 , 64
 3 , 77 , 107 , 110 1 , 111 , 112 , 114 , 116
 16 9 2007 7 1 , 16 21
 2007 7 20 .

2 () 1 12 , 13 , 17 , 21 ,
 23 1 , 24 3 , 25 1 , 28 , 37 1 , 38 , 43 , 45 ,
 77 , 107 , 110 1 114
 11 , 12 , 24 , 28 , 30 1 , 31 3 , 31 2 1 ,
 33 , 36 2 1 , 37 , 42 , 44 , 77 , 110 , 113 1
 115 .

3 () 16 2007 6 30 가 .

4 (6974) 6974

1. . , 「 」 2 , 「
 」 49 76 , 가 .
 2 1 2 1
 . 가 2 1 2 1
 . 1,000 :

2004 7 1

2. 300 1,000 : 2005 7 1

3. 100 300 : 2006 7 1

4. 50 100 : 2007 7 1

5. 20 50 : 2008 7 1

6. 20 , 가 :

2011

5 (6974) 가 4 ,

4

5 2() 4 6
가 가 , (工
期)
" ") (

50

- 1. 「 」
- 2. 「 」
- 3. 「 」
- 4. 「 」
- 5. 「 」

[2008.3.21]

6 () 4 (5
) 3 53 1 59 1
"12 " "16 "
1 4 56 "100 50" "100 25"

7 () 6974

6974
가 ,

1 2 ,

가

8 (가) 6974
가 가

9 () 7465 36 2

가

10 (가) 7566

72 2 3

11 () 25 1 8293
2007 7 1

12 () 28 33 , 111
112 8293 2007 7 1

13 () 5473 37
2 2 1989
3 29
5473 37 2 2
1989 3
29
3

1 2 1
30
1 2 250

14 ()

15 ()

16 ()

2 2 " 14 " " 「 」 2 "

17 4 " 54 71 " " 「 」 55 73 "

2 3 " 14 " " 2 "

21 2 " 59 " " 60 "

27 1 " 31 4 " " 24 4 "

35 1 5 " 37 " " 38 " .

9 4 " 49 " " 「 」 50 " , 20 2 4
" 57 59 " " 「 」 60 " .

3 2 " 14 " " 「 」 2 " , 3 "
15 " " 「 」 2 " .

2 1 " 14 " " 「 」 2 " , 2 "
15 " " 「 」 2 " , 3 " 18

" " 「 」 2 " , 4 " 19 " " 「
」 2 " .

8074

2 2 " 21 " " 2 " .

6 1 " 20 " " 2 " .

18 1 " 「 」 72 " " 「 」 74 " ,
2 " 「 」 72 3 " " 「 」 74 3 " .

16 3 1 " 33 " " 28 " .

29 1 " 34 " " 「 」 34 " .

41 1 " 「 」 33 1 " " 「 」 28 1 " .

2 1 " 14 " " 「 」 2 " , 2 "
15 " " 「 」 2 " .

2 2 " 14 " " 2 " .

51 1 " 「 」 104 " " 「 」 101 " .

<16>

39 3 1 1 " 「 」 19 " " 「 」 2 " ,

2 " 「 」 37 2 " " 「 」 38 2 " .

<17>

5 1 " 「 」 2 9 • 14 16 • 36 • 37
 • 39 • 66 • 110 (6 • 7 • 8 39
) • 112 (36) • 113 (9
) 115 (5)" " 「 」
 2 1 3 , 3 10 , 36 , 38 , 40 , 68 ,
 107 (7 9 40), 109 (36
), 110 (10) 114 (6
)" , 51 2 5 " 「 」 37 2 " " 「
 」 38 2 " .

<18>

2 1 " 14 " " 「 」 2 " , 3 "
 18 • 34 45 " " 「 」 2 , 34 46 " .
 6 2 1 " 「 」 37 2 1 " " 「 」 38 2
 1 " , 2 " 45 " " 「 」 46 " .
 7 2 " 「 」 37 2 " " 「 」 38 2 " .

<19>

141 " 「 」 104 1 " " 「 」 101 1 " .

<20>

31 2 5 " 「 」 37 " " 「 」 38 " .

<21>

8249
 21 3 2 " 「 」 63 " " 「 」 65 " .

<22>

2 " 14 , 15 18 " " 「 」 2 " .
 5 2 2 " 「 」 61 3 " " 「 」 63 3 " .

<23>

8 3 " 6 • 8 • 27 29 • 36 • 42
 45 • 55 • 62 " " 「 」 7 , 9 , 20 22 , 36 ,
 43 46 , 56 64 " .
 16 2 " 31 " " 「 」 24 " .
 34 1 " 15 " " 「 」 2 " ,
 " 22 36 • 38 • 40 47 • 55 • 59 • 62 •
 64 66 • 74 • 81 95 " " 15 36 ,
 39 , 41 48 , 56 , 60 , 64 , 66 68 78
 92 " , " 49 54 • 56 58 • 60 • 61 •

67 73 75 " " 50 55 , 58 , 59 ,
 62 , 63 69 75 " .
 34 2 " 42 66 " " 「 」 43 68
 " , " 15 " " 2 " .
 34 3 " 54 • 57 • 71 • 72 1 " " 「 」
 55 , 73 74 1 " .
 <24> 8236 .
 43 4 2 2 " 「 」 37 2 " " 「 」 38 2
 " .
 17 () 「 」
 가

< 8435 ,2007.5.17 >

1 () 2008 1 1 . < >
 2 7
 8 ()

66 " " "가 " .
 <39>
 9

< 8561 ,2007.7.27 >

6 .

< 8781 ,2007.12.21 >

1 () 6 . < >
 2 () .
 74 3 " 「 」 " " 「 」 . 가
 」 " .

3

< 8960 ,2008.3.21 >

- 1 () 2008 7 1 .
- 2 () 74 2
- 3 () 8372 5
- 2

< 9038 ,2008.3.28 >

- () , 93 8 9 2
- 3
- (가) 74 5
- 가
- (.) 93 8 9 2

< 9699 ,2009.5.21 >

- () 3 .
- ()

< 10303 ,2010.5.17 >

- 1 () 6 . < >
- 2 8
- 9 ()

37 1 " " " "

<86>

10

< 10319 ,2010.5.25 >

2012 1 1 .

< 10339 ,2010.6.4 >

1 () 1 . < >

2 3

4 () <26>

<27>

13 , 24 4 , 53 3 . 4 , 63 3 , 64 1
• 3 , 67 2 , 70 2 • 3 , 88 • 1
4 , 89 1 , 93 , 96 2 , 102 3 ,
104 1 , 106 116 1 1 • 2 " " "

26 " " " " .

101 1 " " " " .

106 " " " " .

<28> <82>

5

< 10366 ,2010.6.10 >

1 () 2 .

2

3 ()

38 1 " (質權) " " (質權) . 「 .

" " " " . 「 . 2 「 」

" .

4

< 10719 ,2011.5.24 >

1 () 6 . < >

2 5

6 ()

44 2 1 " 「 」 2 8 " " 「 」 2 11
 " , " 2 5 " " 2 7 " , 2 " 「
 」 2 5 " " 「 」 2 7 " .
 44 3 2 " 「 」 2 7 " " 「 」 2
 10 " .

< 11270 ,2012.2.1 >

1 () 6 .
 2 () 43 2 1
 1 3

3 () 43 3 1
 1 2

4 (가) 60 2
 1 1 80

5 (가) 74 2
 가 .

6 (. 가) 74 3
 . 가 .

7 () 11024 .
 69 3 " 가" " 가" .
 70 4 " 69 3 가 " " 69 3 가 " .

< 12325 ,2014.1.21 >

1 () 2014 7 1 .
 2 (가) 74 .

< 12527 ,2014.3.24 >

1 () . , 74 7 9

1. 300 : 6

2. 300 : 2

2 () 27 3

3 () 74 7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2017.1.1] [27751 , 2016.12.30,]

1 () 「 」

2 () 「 」 (" ")

2 1 6

. <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

1. 35 5

2. 46

3. 74 가

4. 78

5. 「 .가 」 19

6. 「 」 2 6

7. 「 」, 「 」 「 」

8.

2 1 6

. < 2010.7.12 >

3 ()

. < 2010.7.12 >

4 () 2 1 6 , 2 3

. < 2010.7.12 >

5 () 79 , 80 82 84

가

1 1 (" ")

100 5

, 가

, 2

가

1 가 ,

1 2 가 78 「 1 3 8

6 () " " (所 定)

1

1. 2. 1 3. (2 1 7)

4. (1 12 4) 5. . . 2 4

6. ()

7. 가 1 6 1 6 2 1

7 () 11 2 4 1

7 2() 11 3 " (,) 1

(" ") 가

1 93 10 5 (" ")

1. : 1

(日) (日數)가 2 1

2. : 1

60 62 (60 2 가 2 1 가 1 2 1 5

1 「 」 2 5

1. 「 , 「 , 2 8

2. 1 가 1

[2008.6.25]

8 () 17 "

- 1.
2. 93 1 12
3.

8 2() 17 2 "

1. 51 2 , 52 , 57 , 58 2 • 3 , 59 62

2. 93

3. 「 」 31 1

4.

[[2011.9.22](#)]

9 () 18 2 2 .

<2008.6.25>

<2008.6.25>

10 () 24 4 1 30

. < [2010.7.12](#) >

1. 가 99 : 10

2. 가 100 999 : 10

3. 가 1,000 : 100

1

1.

2.

3.

4.

11 () 「 」 (" ") ") 30 1 . 30 .

12 () 33 1 15

가 1
가 15

33 2 . ()
10

.< 2010.7.12>

13 () 33 4
3 .

14 () 가
가

1. 가

2. ,

15 ()

가 1

가

.< 2010.7.12>

1

.< 2010.7.12>

16 () 35 5 " "
3 .

17 () 37 1 "
" 100 20 .

18 () 37 2 " "
. < 2014.9.24>

1. 「 」 7 1

2. 「 」, 「 가 」, 「 」

3. (存否)

4. 1 3 가

19 () 39 1
30 , 3 .

20 () 41 1

. < 2010.7.12 >

- 1.
- 2. (性)
- 3.
- 4.
- 5. (履歷)
- 6.
- 7.
- 8.
- 9.

21 () 30

22 () 42 "

"

- 1.
- 2.
- 3. .
- 4. . .
- 5. .
- 6. 가
- 7. <2014.12.9 >
- 8. 51 2 , 52 , 58 2 . 3 59
- 9. 66
- 42

- 1. 가
- 2. 가
- 3.
- 4. , 가
- 5. 1 7 가 가
- 6. 1 8
- 7. 18 가 (18 가)

8.

23 (1) 43 2 " , , "

1. 1

2. 1

3. 1 ,

4.

23 2() 43 2 1 " . "

1. 36 • 43 • 56 (") (" ")가 (「 」) 27 (가)

2. 가 43 2 2

3. 가 「 」

4. 가 「 」 5

5. 가 , 43 2 3 (" ")가 가

6. 1 5 가

[2012.6.21]

23 3(•) 43 2 1

1. • • • (가) • ()

2. 3 1 가 3 , .

[2012.6.21]

23 4() 43 3 1 " "

1. 가 「 」 27 (가)

2. 가 43 3 1 (" ")

3. 가 「 」

4. 가 「 」 5

5. 가

[2012.6.21]

23 5() 43 3 1 (" ")

1. . (가) .

2. 1 2 23 4 가 . 15

[2012.6.21]

24 () 44 2 . < 2012.6.21 >

1.

2.

3.

[2012.6.21]

25 () 45 " (非常) " 가

1.

2.

3. 1

26 () 가

46 1

100 70

, 46 1

27 () 48

1.

2.

3.

4.

5. 가 가

6.

7.

8.

9. , , (

가)

10. 43 1

30

1 2 5

1 7 8

1. 11 2 4

2. 63

28 () 51 2 4 "

"

51 4

.<

2010.7.12>

29 () 52 6 " 가
" (가) 가
1) .

30 () 55 1
.

31 () 58 3 " "
. < 2010.7.12 >

- 1.
- 2.
3. ,
4. • • •
5. •
- 6.

32 () 59 4 " "
"

33 (가) 60 5 가
.

34 () 63 4 " "
• .

35 () 64 13
15 , 가 13

1

. < 2010.7.12 >

2

()
가 (連名) .

36 () 35 2

가 . < 2010.7.12, 2014.12.9. >

15

가

66

가

. <

2014.12.9 >

[2014.12.9]

37 () 40

. < 2010.7.12 >

38 <2014.12.9>

39 () 15

. < 2010.7.12 >

40 () 65 , 가 18
18 4 .

41 () 69 「 」 46

42 () 72 18

- 1. ,
- 2. • •
- 3.
- 4. •
- 5. 1 4

43 (• 가) 74 2 " "
. < 2012.6.21 >

- 1. •
- 2. 가 가 40
- 3. 가 •
- 74 3 가 • 가
- 가 , • 가

. < 2012.6.21 >

2 • 가
• 가 . < 2012.6.21 >

- 1. (" ") 11 :
- 5
- 2. 12 15 : 10
- 3. 16 21 : 30

4. 22 27 : 60
5. 28 :

43 2() 74 7
3
(,)
()

[2014.9.24]

44 () 78 2
5
가

45 <2008.6.25>

46 () 1

47 () 80 3
6 . < 2008.6.25 >
6 가 가

- 1. 5 가 : 가
3
- 2. 8 가 : 가
2
- 3. 13 가 : 가
1
6 가 6

<2008.6.25>

48 () 82 2

. < 2008.6.25 >

- 1. 가 가 (), ,
(孫)

- 2. 가 가 , , ,
- 3. 가 가
- 4. 가 가

1 2 가 1

49 () 가 2

50 ()
가 , 가

51 ()
가

52 ()
가
가

53 <2008.6.25>

54 () 99 2
가 18
7

55 ()

56 ()

57 () 2

58 () 1 2.5 , 1
15

59 () 106

. < 2010.7.12 >

- 1. 13
- 2. 24 4
- 3. 53 3
- 4. 53 4
- 5. 63 3
- 6. 64
- 7. 67 2
- 8. 70 2
- 9. 88

가

18

가

- 10. 93
- 11. 96 2
- 12. 102 3
- 13. 104 1
- 14. 116
- 15. 6974
- 16. 28 2
- 17. 35 2
- 18. 38 2

2

59 2() (59

)

가

「

」

23

(7

)

19

1

4

가

. < 2012.6.21 >

- 1. 19 2
- 2. 28 1
- 3. 30 3
- 4. 33
- 4 2. 43 2
- 5. 64
- 6. 81
- 7. 88 1 89 1

43 3

8. 104

9. 112

[2012.1.6]

59 3() 25
2017 1 1 3 (3 1 1)
. < 2016.12.30 >

[2014.12.9]

60 () 116 1 7 . <
2010.7.12, 2011.3.30 >

[2008.6.25]

[2011.3.30]

< 20142 ,2007.6.29 >

1 () 2007 7 1 . , 2 4
2

2 (18158) 18158
. < 2010.12.29 >

1. . 「 」 4
8258 2 「
」 2 (")
"), 「 」 49 76 ,
가 . 2 1
2 1 . 가 2 1
2 1 . 1,000

: 2004 7 1

2. 300 1,000 , 가
: 2005 7 1

3. 100 300 : 2006 7 1

4. 50 100 : 2007 7 1

5. 20 50 : 2008 7 1

6. 20 : 2011 7 1

3 (18805) 6974 1 6 " "
가 2005 7 1 .

4 ()
 1 " 104 " " 「 」 101 " .
 5 " 「 」 8 (82)" " 「 」 8 (79)"
 9 4 " 「 」 72 " " 「 」 74 " .
 50 1 2 " 「 」 37 2 " " 「 」 38 2 "
 89 2 2 " 「 」 81 1 83 " " 「 」
 78 1 80 " .
 26 1 2 " 「 」 37 2 " " 「 」 38 2 "
 26 1 " 「 」 40 1 " " 「 」
 44 1 " .
 49 4 1 2 " 「 」 37 2 " " 「 」 38 2 "
 " .
 41 1 " 19 1 " " 「 」 2 1 6 " ,
 42 2 4 " 37 2 1 " " 「 」 38 2
 1 " .
 24 " 「 」 40 " " 「 」 44 " .
 66 2 " 「 」 37 2 " " 「 」 38 2 " .
 21 5 1 2 " 「 」 37 2 " " 「 」 38 2
 " .

4 3 " 96 55 18 " " 「 」
93 59 10 " .

21 2 1 " 「 」 18 " " 「 」 2 1 5 " .

10 2 " 「 」 32 " " 「 」 26 " ,
3 " 「 」 20 " " 「 」 2 1 7 " .

<16>

5 1 " 「 」 14 " " 「 」 2 1
1 " .

<17>

11 2 " 42 " " 「 」 43 " .
5 () 「 」

< 20803 ,2008.6.5 >

1 () 2008 6 22 . < >

2 3

4 ()

2 1 5 " 「 」 " " 「 」 . 가
「 」 .

5

< 20873 ,2008.6.25 >

1 () 2008 7 1 .

2 ()

8372 5 2 () " ") . "

가 가) , " (

" 「 」 「 」 11
1 1 , " " 「 」

」 3

×
 =
 ×
 1
) (가

< 21695 ,2009.8.18 >
 2009 8 22

< 22061 ,2010.2.24 >
 1 () 2010 4 10
 2 ()
 4 13 " 「 」 7
 (" ")" " 「
 」 8 (" 1
 " ")" ,
 3 " " "
 " , 가 18 2 "
 " " " , 18
 8 " " " " "

< 22269 ,2010.7.12 >
 1 () . < >
 2 () <41 >
 <42 >
 2 2 , 3 , 4 , 10 1 , 28 2 , 31 6 ,
 35 2 , 36 , 37 , 38 2 , 59 , 60 , 2
 1 , 4 13 • 1
 3 • 가 18 2 •
 18 " " " 8 5 37 "

12 4 , 15 2 • 3 , 20 , 35 2 , 36
 39 " " " " .
 59 " " " " .
 <43> <136>

< 22567 ,2010.12.29 >

1 () .
 2 (20 6974
) 8372 4 6 "
 " 20
 2011 7 1 .

< 22687 ,2011.3.2 >

1 () .
 2
 3 ()
 2 1 7 " 「 」 " " 「 」 " .
 4

< 22804 ,2011.3.30 >

1 () .
 2 ()
 7
 7

< 23155 ,2011.9.22 >

2012 1 1 .

< 23488 ,2012.1.6 >

- 1 () . < >
- 2

< 23868 ,2012.6.21 >

2012 8 2 .

< 23946 ,2012.7.10 >

- 1 () 2012 8 2 .

2

- 3 ()

2 1 3 " 가" " 가" .

< 24652 ,2013.6.28 >

- 1 () 2013 7 1 .

- 2 () 5

가

< 25630 ,2014.9.24 >

- 1 () 2014 9 25 .

2

- 3 ()

18 1 " 「 」 4 " " 「

」 7 1 " .

< 25631 ,2014.9.24 >

2014 9 25 .

< 25840 ,2014.12.9>

1 () 2015 1 1 .
2 16

< 27619 ,2016.11.29>

1 () . < >
2
3 ()

2 1 7 " 「 」 " " 「 」 " .
<17>

4

< 27751 ,2016.12.30>

1 () 2017 1 1 . < >
2 12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 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text{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times \frac{\text{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text{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times 8\text{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표 4] <개정 2010.7.1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 중인 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러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p>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낱,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p>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p>18세 미만인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 2) 검댕·광물유·옻·타르·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 3) 아연 등의 금속흡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가) 납
- 나) 수은
- 다) 망간
- 라) 비소
-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니켈·알루미늄·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찌꺼기부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냉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 가. 진찰
-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마. 입원
- 바. 간병
- 사. 이송

[별표 6]

신체장애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p>제5급 평균임금의 790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p>제6급 평균임금의 670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p>제7급 평균임금의 560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

	<p>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p>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p>제9급 평균임금의 350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p>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애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p>사람</p> <p>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p>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p>쓰게 된 사람</p> <p>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p>
<p>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p>	<p>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p> <p>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p> <p>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p>	<p>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p> <p>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p> <p>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300	300	300	
나.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	50	100
다.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	50	100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80	150	300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라.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마.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80	150	300
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20	30	50
사.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80	150	300
아.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500	500	500
자. 법 제91조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차.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0	130	250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카.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80	150	300
타.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 규칙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2)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0	30	50
3) 기숙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		30	50	100

<p>우 과.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p>	<p>법 제116조 제1항제3호</p>			
<p>1)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500	500	500
<p>2)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p>				
<p>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p>		50	100	200
<p>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p>		300	300	300
<p>3)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p>				
<p>가)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50	100	200
<p>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p>		300	300	300

1.

3

2.

2

3. 「 」

2

2

4. 1

3

3

2

2

4

3

1

4

[[2012.6.22](#)]

8 (

)

46

2

4

9 (

)

53

3

5

가

. < [2010.7.12](#) >

1

가

「

」

가

1

가

3

6

가

.<

[2016.12.29](#)>

10 (

)

63

3

(監視)

(斷續的)

7

. < [2010.7.12](#) >

1

(狀態的)

가

1

가 .

1

8

.<

[2010.7.12>](#)

11 () 15 가 64 35

9 15

.< [2010.7.12>](#)

15 39

9

15

.<

[2010.7.12>](#)

1 2

10 15

.< [2010.7.12>](#)

12 (가) 70 2 18

11

가

70 3

.<

[2010.7.12>](#)

1

가

12

가

.< [2010.7.12>](#)

13 () 81

13

14 () 88 1 89

1

가

14

.< [2010.7.12>](#)

1.

2. 가 ()

15 () 93

15

.< [2010.7.12>](#)

1. ()
 2.

3.
 ()

16 ()

- 1. 41 1 : 16
 - 2. 48 : 17
 - 3. 53 4 : 18
 - 4. 67 2 : 19
 - 5. 96 2 : 20
 - 6. 102 3 : 21
- 1 1 2

16 2()

2017 1 1 3 (3 1 1)
 . < [2016.10.20](#) >

[2014.12.31.]

17 () 60 4

< 281 ,2007.7.24 >

- 1 ()
 - 2 (6974) 가 5
- 4 6974
- 14 22
- (" ")

1. :

2. :

7

1

3
가

3

3 ()

11 1 1 " 「 」 20 " " 「 」 2
1 7 "

15 " 「 」 47 " " 「 」 48 "

12 4 " 「 」 31 " " 「 」 24
"

10 3 4 " 「 」 63 " " 「 」 65 "

33 1 " 「 」 40 1 " " 「 」
「 44 1 " , 35 2 " 「 」 53
" " 「 」 54 "

4 () 「 」

< 1 ,2010.7.12 >

1 () . < >

2 ()

3 , 9 1 • 3 , 10 1 • 4 , 11 1 3 , 12
1 • 2 , 14 , 15 , 2 ,
5 , 7 , 9 , 11 ,

14 , 15 22 " "

" "

4 7 1 " " " " .

2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4 , 15 , 18 21

22 " () " " () " .

<36>

< 48 ,2012.2.9>

1 () .

2 ()

, " "가 " " .

< 59 ,2012.6.22>

2012 8 2 .

< 72 ,2012.12.27>

.

< 117 ,2014.12.31>

2015 1 1 .

< 127 ,2015.3.23>

.

< 168 ,2016.10.20>

.

< 174 ,2016.12.29 >

.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폐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개요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남 : 명, 여: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근로자 대표	⑧직위	⑨성명
⑩해고사유 (별지작성가능)		
⑪해고예정인원	명 (여 :) · 상시근로자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⑫해고계획동보일	⑬ 해고계획 동보방법
	년 월 일	
	⑭ 해고계획 동보내용 (별지작성가능)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기 타	
⑮ 해고일정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근로자대표에게 동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㉔ 란에는 노동조합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된 대표자 등을 적습니다.

㉕ 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란에는 "연장근로의 축소,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의 중지, 배치전환, 재교육·훈련의 실시, 퇴직 희망자의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하였거나 앞으로 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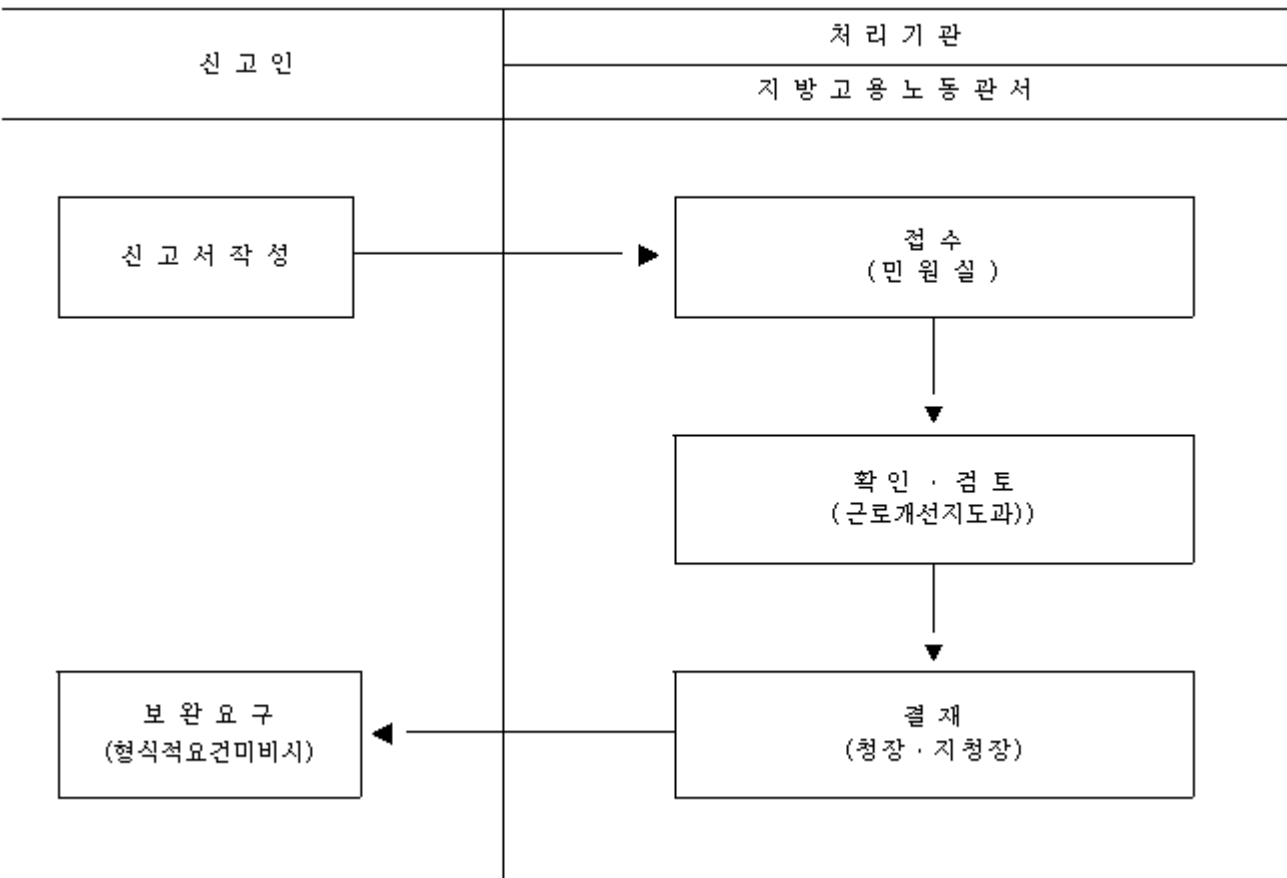
"해고 기준"란에는 "근속연수가 짧은 자,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낮은 자 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타"란에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㉖ 란에는 해고예고일, 해고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90일 (사건에 따라 연장가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명	근무부서
피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해고등 발생일		
신청취지		
신청이유	(별지 작성 가능)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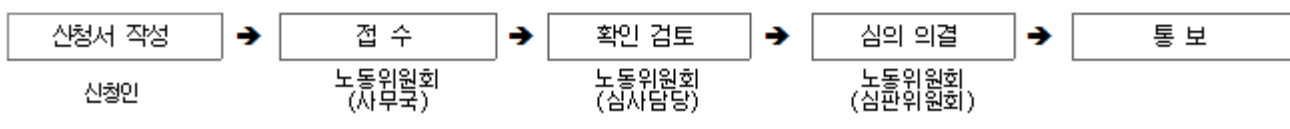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승인 신청내용	⑧근로자수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명 (남 명, 여 명)</div>	
	⑨휴업기간	
	⑩지급하려는 휴업수당	

⑩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구체적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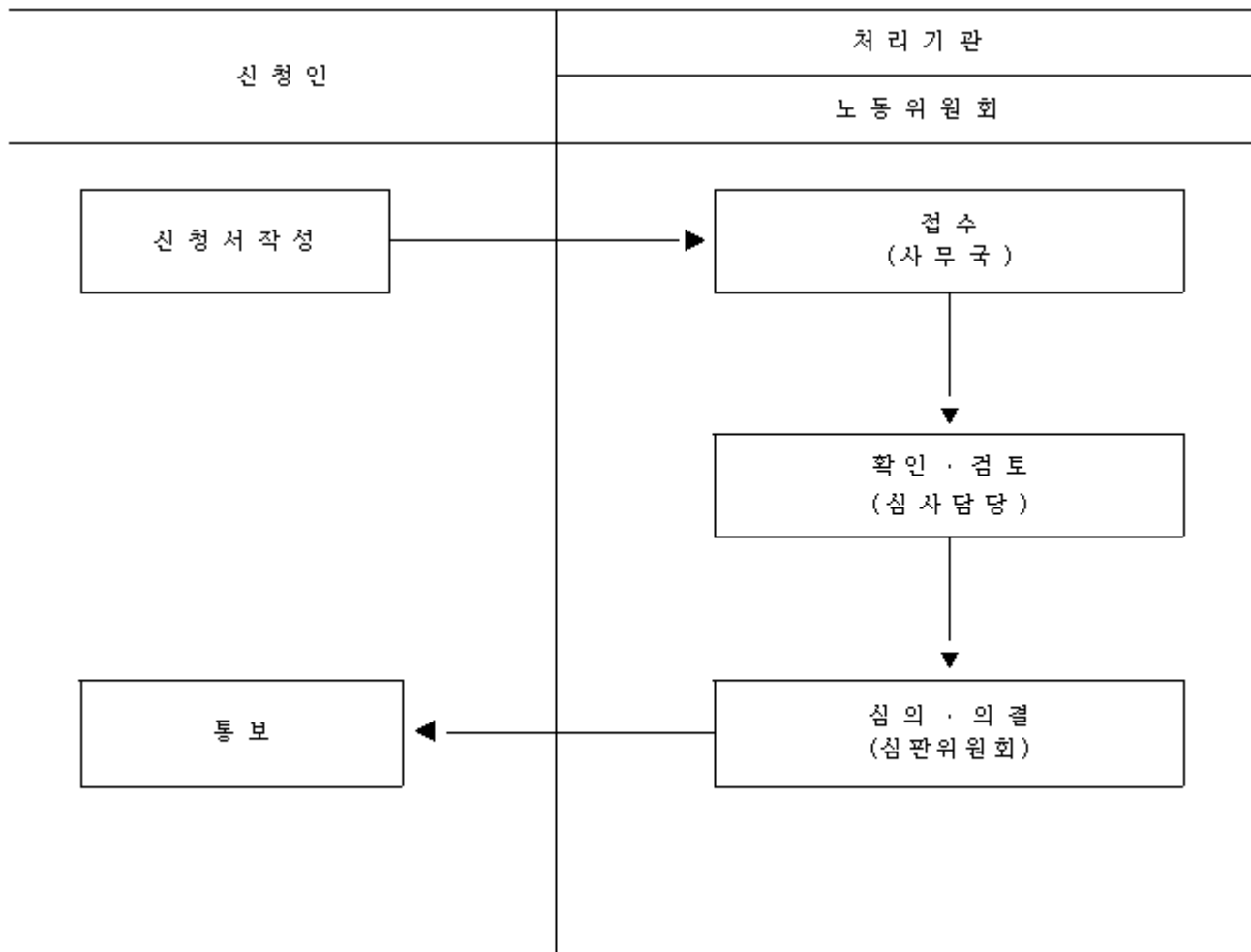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 휴업기간"란에는 휴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총 휴업일수를 적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 지급하려는 휴업수당"란에는 평균임금의 00% 또는 통산임금의 00% 등으로 적습니다.
- ㉢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구체적 사유"란에는 휴업의 사유 및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적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29.>

제 호 근로시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인가서 <input type="checkbox"/> 승인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추가 연장근로시간(주당) 시간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p>「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을 <input type="checkbox"/> 인가 <input type="checkbox"/> 승인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p>	

210mm× 297mm(백상지 80g/㎡)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신청 내용	⑧종사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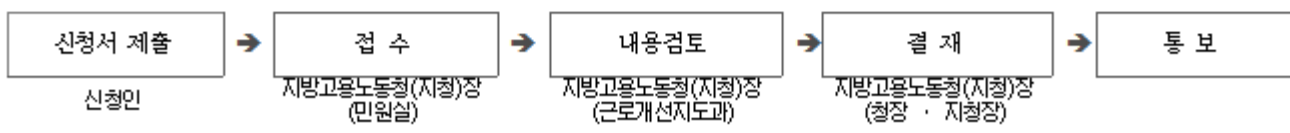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교부 [] 재교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15세 미만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사용자가 될 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장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 교부, [] 재교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 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 미만인 자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직종을 모두 적으시기 바라며, 이 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장"란은 15세 미만인 자가 의무교육대상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재교부의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h2 style="margin: 0;">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h2>		
15세 미만인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p>「근로기준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사용을 인허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p>		

[]임산부 []18세미만인 자 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신청이유								
	사유발생일	종사업무							
	인가기간								
	인가대상 근로자수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야간근로</td> <td style="width: 30%;">명 (남</td> <td style="width: 30%;">명, 여</td> <td style="width: 10%;">명)</td> </tr> <tr> <td>휴일근로</td> <td>명 (남</td> <td>명, 여</td> <td>명)</td> </tr> </table>	야간근로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명 (남	명, 여
야간근로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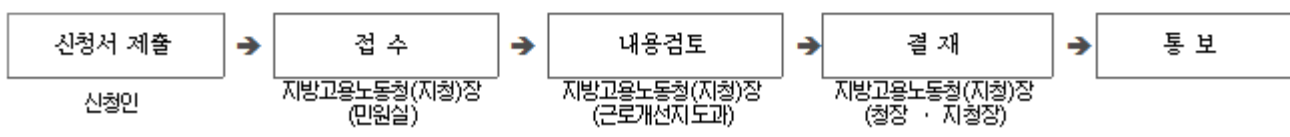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사본 2. 법 제70조 제8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	
대상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형태	취업장소
	종사업무	입사연월일
상병상황	상병명	상병연월일
	상병부위	상병상태

「근로기준법」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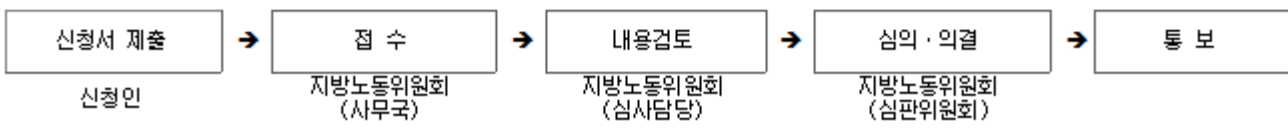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노동위원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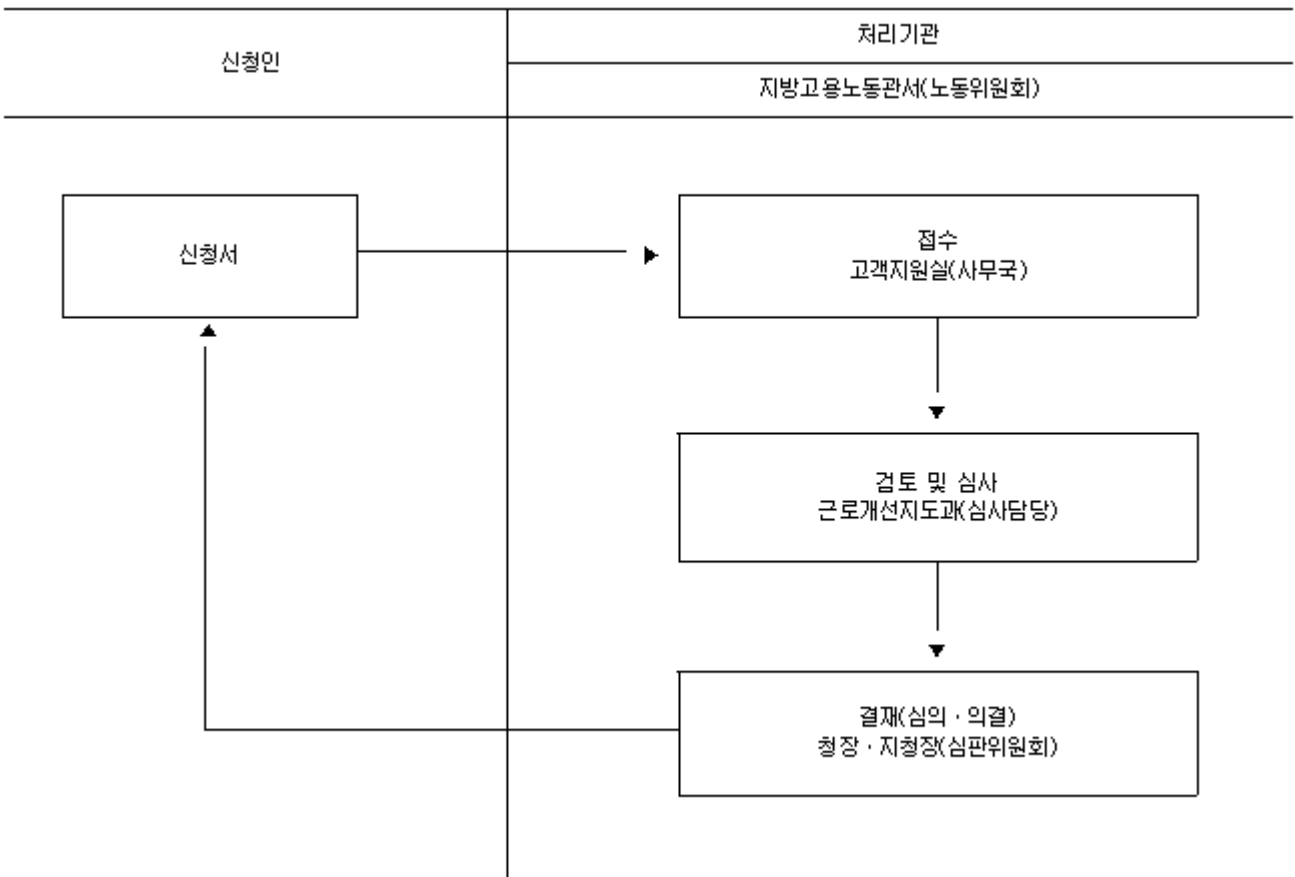
첨부서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명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④부양가족	명	⑤종사업무			
이 력	⑥기능 및 자격	퇴 직	⑩해고일	년 월 일	
	⑦최종 학력		⑪퇴직일	년 월 일	
	⑧경력		⑫사유		
	⑨병역		⑬금품청산 등		
⑭고용일(계약기간)	년 월 일 ()	⑮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16> 근 로 계 약 조 건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h2 style="margin: 0;">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h2>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년 월 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휴게시간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휴게시간 : 시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휴일 : 일</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〇〇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orange;"> 직인 </div> </div>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근로계약 해지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종사업무	
계약내용	
해지사유	
<p>「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p>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h2 style="margin: 0;">취업규칙 변경명령서</h2>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전화번호 :)</div>	
변경을 명하는 사항	
변경을 명하는 사유	
변경기한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년 월 일까지</div>	
<p>「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규칙 중 위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할 것을 명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div>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2.27>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제 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임 검 <input type="checkbox"/> 검 진 </div> 지령서 </div>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장 소	
범 위	
임검자(검진자)의 소속·지위·성명	
<p>「근로기준법」 제10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임검, <input type="checkbox"/>검진을 실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20px; margin-left: 10px;">직인</div> </div>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2012.12.27>

· ·
·
· : kweonkyu@naver.com
· : 2017.4.28



가